

「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06. 13(월) 평창군수(경제체육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6. 15(수)
- 상정일자 : 2016. 06. 20(월) 제21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경제체육과장 한왕기)

-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예산·인력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제4항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구성은 6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음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
 -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관련 협약 체결관련 사항
 - 안 제5조에서는 관련 또는 단체 자격을 각각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의견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있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,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부.

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사실조사"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사실조사 의뢰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1.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·인력이 절감되는 경우
2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
3.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4조(사실조사 협약 등)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 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협약서는 [별표 1]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, 위탁의 범위, 협약기간, 업무의 위임, 처리기한, 책임과 의무, 협약의 해지,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.

제5조(관련 기관 또는 단체)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

갖춘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.

1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
2.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실조사 등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